

「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체육센터 신설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, 체육센터의 이용료, 전용 사용료 및 감면율을 명확히 하고 체육센터의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항(안 제5조)
- 수탁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(안 제7조)
- 사용허가, 취소, 제한에 관한 조항(안 제12조, 제13조)
- 사용료 징수, 반환, 감면에 관한 조항 (안 제14조 ~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체육센터 신설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, 체육센터의 이용료, 전용 사용료 및 감면율을 명확히 하고 체육센터의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신규조성되는 들성생활체육센터, 강동국민체육센터, 도봉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,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체육센터의 이용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